협력업체와 더불어 품질 최우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협력업체 등록 가이드

- 품질활동능력평가 -

01

협력업체 등록
품질활동능력 평가 안내

품질활동능력 평가항목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품질활동능력 평가는 크게 7가지 항목으로 구분 (총 15점)

1	2	3	4
조직구성 (2점)	품질요원 자격부여 (1점)	품질시스템 수립 (8점)	품질시스템/표준 도입경과 (1점)

5	6	7
대외감사 수검실적 (1점)	대내교육훈련 실적 (1점)	대외교육훈련 실적 (1점)

합격기준 : 80% (15점 중 12점 이상)

항목별 확인내용 및 제출문서

평가항목	확 인 내 용	제 출 문 서
1. 조직구성	▪ 품질관리 전담조직 유무 및 독립성 확인	▪ 회사 조직도 및 조직별 인원 현황
2. 품질요원 자격부여	▪ 품질감사자, 검사/시험요원의 자격부여 및 보유현황 확인	▪ 절차에 따른 자격인증 관련 증빙문서
3. 품질시스템 수립	▪ 유효한 품질인증서 보유 여부 확인 ▪ 인증서 미보유 시, 절차서/표준 수립 상태 확인	▪ 인증서 사본(ISO, KEPIC 등) ▪ 품질매뉴얼/계획서 ▪ 수립된 품질시스템(절차서 등) 목차
4. 품질시스템/ 표준 도입경과	▪ 품질시스템, 표준 도입경과 확인	▪ 상기 제출문서로 대체 ▪ 필요시 개정이력 등 추가 제출
5. 대외감사 수검 실적	▪ 대외감사, 검사 및 심사 수검실적 확인 (최근 2년)	▪ 대외감사, 검사 및 심사 수검 증빙문서 (계획, 회의록, 보고서 등)
6. 대내교육훈련 실적	▪ 대내교육훈련 실적 확인(품질교육 포함) (최근 2년)	▪ 교육훈련 실적 확인을 위한 증빙문서(교육훈련계획, 참석기록지 등)
7. 대외교육훈련 실적	▪ 대외교육훈련 실적 확인(품질교육 포함) (최근 2년)	▪ 교육훈련 실적 확인을 위한 증빙문서(교육이수/수료증, 교육시간표 등)

02

협력업체 등록
품질활동능력 평가 FAQ

협력업체 등록 품질활동능력 평가 FAQ

1 **품질조직**은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하나요?

- 품질조직의 유무와 독립성으로 품질조직 항목을 평가하므로 **조직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감점 대상**입니다.
- 조직의 독립 여부는 조직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품질보증계획서 등 조직의 책임과 권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2 **품질요원 자격부여는**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 먼저, 등록 신청 업체의 내부 절차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품질감사자, 품질검사자/시험자 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 품질요원 자격부여 평가는 업체의 내부절차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빙문서를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예: 승인권자의 서명이 포함된 유효한 자격 인정서, 교육훈련기록 등)

  ※ 해당 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서 부여한 자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협력업체 등록 품질활동능력 평가 FAQ

3 품질시스템 수립 항목의 **인증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먼저 인증서에 기재된 회사명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지원 분야가 인증서의 인증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며,
  인증 유효기간이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지 판단하여
  모두 만족하는 경우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4 **품질시스템 도입경과**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 수립된 품질시스템(절차서, 지침서 등)의 **표지, 목차 또는 전문**을 제출하시면 **도입경과 연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단순히 개정일자만 명시되어 있는 목차를 제출할 경우 도입경과 연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빙할 **개정이력 등의 유효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협력업체 등록 품질활동능력 평가 FAQ

5 **대외감사/심사** 수검의 **인정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대외감사/심사는 발주처 또는 인증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수검 및 심사를 뜻하며, 해당 수검 또는 심사 관련 증빙자료(계획, 회의록, 보고서 등)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자료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2년 내의 자료만 유효하며, 이외 기간의 자료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내 및 대외교육훈련 실적 역시 동일합니다.)

6 정보보안 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도 **대내교육훈련 실적**으로 포함되나요?

- 질문의 예시와 같은 교육은 품질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 증빙자료(결과보고서, 교육시간, 참석기록지 등)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교육계획을 제출하였어도 교육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업체가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사내에서 교육을 진행하거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모두 대내교육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교육 계획 수립 주체에 따라 대내교육 여부를 판단합니다.)

협력업체 등록 품질활동능력 평가 FAQ

7 어떤 교육훈련이 **품질교육**에 해당하나요?

- 품질요건을 기반으로 수립된 시스템 문서(매뉴얼, 절차서 등) 및 시스템 문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문서(감사보고서, 경영검토보고서 등)에 대한 교육훈련은 품질교육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품질 관련 표준・요건 교육도 품질교육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기술 기준에 대한 교육은 품질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8 **대외 품질교육**에는 어떤 교육이 있나요?

- 전문 교육기관이 주관하여 실시한 교육 중 교육명에 " 품질 " 또는"품질요건" 등이 포함된 교육을 뜻합니다.
- 교육명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교육 커리큘럼에 품질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품질 교육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교육 명칭과 상관없이 평가자가 품질교육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표(또는 커리큘럼)를 증빙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보다 명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 등록 품질활동능력 평가 FAQ

9 대내·외 **교육훈련 이수 주체**는 누구이며, **몇 명 이상 이수**해야 하나요?

- 특정 직위나 부서에 한정되지 않으며, **1명이라도 품질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교육실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협력업체 품질평가 문의처

- 품질경영처 품질기획팀
  나금영 주임
  054-421-7858